

제346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16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5. 아동수당세법안(계속)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10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1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10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1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10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10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0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1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11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11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1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11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1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1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1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11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11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11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11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11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11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11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11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12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12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12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12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12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12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12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12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12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12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12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12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12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12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12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2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2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2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1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3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3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3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3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3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3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3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4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4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4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4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4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4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4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4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4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4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4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4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4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14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14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14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14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1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1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1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 의원 대표발의)(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오세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05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세법안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I 권 7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의 소득세법 중에 정부안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소득세법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할 때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를 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3주택 이상 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외해 주는 특례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이 특례도 2년간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겁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것뿐만이 아니고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낸 것도 같이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기준이 소득금액 100만 원, 그다음에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이런 연령 요건이 있는데 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이 연령 요건을 폐지해서 직계비속이 20세가 넘더라도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셋째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입니다.

소득세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이번에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이것은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이런 지급명세서 제출이 조금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2%로 가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것을 1%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본인의 세금하고 관계없이 매출자와 매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 협력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예를 들면 기술용역소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그 대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급할 때 과세를 합니다.

현재는 이 용역소득의 범위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와 가지고 국내에서 제공할 때만 과세를 하는데 지금 개정 내용은 뭐냐 하면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제공을 안 하고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우리 국내에서 지급하면 우리가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에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기한 확대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 이런 것을 지급받을 때 조세조약에 따라 가지고 제한세율 이런 것을 적용받는데 그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국인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 분기별로 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반기로 확대해 가지고 주식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은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세의 예정신고기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할 때 피담보채무를 같이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와 재산을 같이 넘길 경우에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 봐 가지고 양도세와 증여세를 같이 부과하는데 양도세는 2개월 내로 납부하라고 그리고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기타 개정사항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매우 간단한 것을 위주로 해서 기타로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붙여서 제대로 상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 7개 중에서 뒷장에 있는 비거주자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기타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경정청구기한 확대하는 것이나 마지막에 있는 예정신고기한을 일치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검토의견을 붙여 가지고 다시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검토의견을 붙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타 개정사항의 대부분은 기존의 요건을 완화해 주거나 또는 서민주거 지원이라든지 가산세의 과다한 부담을 덜어 주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 아닌가 하는 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비거주 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그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횡수 조정, 맨 밑의……

○박주현 위원 아니, 횡수 조정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 위의 것이요, 경정청구기한.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 위의 경정청구기한 확대 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이 세 건은 합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네 건은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법인세 부분은 잠시 후에 심사하도록 하시고.

심사자료 II권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심사자료 II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익법인 제도 개편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한도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다만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함진규 의원안은 상속세·증여세 면제 한도를 각각 5%에서 10%, 성실공익법인 같은 것은 10%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박용진 의원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대신에 상속·증여세 면

제 한도를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은 성실공익법인이 일부 대기업 집단에 의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원혜영 의원안은 출연재산가액의 공익목적 사용 등을 요건으로 투명공정공익법인 제도를 신설하고 주식 보유 한도를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함진규 의원안, 박용진 의원안, 원혜영 의원안은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고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찬성의견은 상속·증여세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만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세 한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찬성의견은 일부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신설,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안은 공익법인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만, 성실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의 지배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만 이를 폐지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혜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의 공익목적 사용 등을 요건으로 투명공정공익법인을 신설하고 과세 불산입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익법인 제도 개편에 대한 상반된 방향의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해서는 상향하고 하향하는, 모든 의원 법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 세법을 넘어 가지고 다른 법률, 그러니까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법이나 민법 등 관련된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더,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준회계기준을 도입한다든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은 주식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는 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10%이고 그렇지 않으면 5%인데 보통 10% 같은 경우 외국의 예를 봤을 때도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지배하는 수단으로 보면 10% 미만까지는 보통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세법에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인지, 결국은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과 같은 일반법에서 이것들이 규율이

되어야지, 그 법들과의 정합성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그때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총 몇 개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공익법인이 3만 4000입니다.

○송영길 위원 그중에 출연된 액수가 총 얼마쯤 돼요, 대략? 3만 3000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3만 4000개입니다.

○송영길 위원 3만 4000개.

그런데 이것의 관리 실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지난번의 청계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철수 씨가 했다는 재단도 그렇고 뭐만 하면 기부한다고 재단 출연해서 사실상 그 재단 조직 유지하고 재단 대표들 월급 타 가고 비용 쓰는 데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정대로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게 제대로 감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그것을 감찰하지요? 기재부에서 관리하는가요? 해당 부서,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래서 저희가……

○송영길 위원 총괄해서 기재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관리청에서 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통일적인 회계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해서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통해서……

○송영길 위원 그런데 주식으로 출연을 하면…… 3페이지에도 참여연대에서 한 게 나왔네요. 배당률이 1.68%밖에 안 되고.

그러면 공익법인은 재원 조달 역할을 하는가요? 괜히 주식을 출연했다는 말만 한 거지 그 주식을 매각도 안 하잖아요. 매각도 안 하고 주식매당

를 가지고 공익법인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인가, 주식으로 출연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썽, 일단은 운영 수익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송영길 위원 주식을 처분해서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원래는 처분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송영길 위원 주식 출연하면 주식 처분하는 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공익법인 정관에서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목적사업에 투자한 자산으로 할 것이냐 구분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 비율은 규정이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관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그것은 관련 법률에 따르고 세법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포트폴리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재산은 처분을 좀 제한하고……

○송영길 위원 이번에 미르·K재단 같은 경우에 기본재산이 거의 없었잖아요, 다 갖다 써먹으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미르·K재단은 제가 알기로 공익법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 설립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냥 일반 법인이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민법상 설립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한도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박영선 위원이 아예 폐지하자 그러는데 이것은 좀 저는……

○박광은 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용 중에 운영수입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은 위원 그 비용 중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기부금이나 학술영역이나 이런 데 쓴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

까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없습니다. 사용 용도별 구분 이런 자료는……

○**박광은 위원** 의결권 행사를 실제로 한 사례 그런 것 볼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지금 없으면 정부에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박광은 위원** 그것이 있어야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주무관청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성실법인의 경우에 10%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재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법인이라는 것이 결국 감사체계, 전용계좌 개설 등등 몇 가지 형식적인 사항 등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갑자기 두 배로 올려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실공익법인 말고는 불성실공익법인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10%라는 것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주 대대대기업의 경우에는 진짜 2%, 3%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배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다르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명성과 공익성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주로 투명성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익성이지요. 공익성에 대해서 현재는 그냥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부처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승인을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미국식으로 출연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의무적으로 활동 내

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공익성 담보가 없이 이것을 확대하거나 풀어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정말 다른 방향의 목적…… 그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대기업집단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어젠다가 될 텐데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겠다,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에 가산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대기업집단이, 소위 제벌들이 편법 상속·증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이것이 충분한가, 그러니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정하고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정도 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정부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꼭 법이 아니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법인의 어떤……

○**이종구 위원** 그동안에 수십 번 얘기해 온 것 아니냐, 이것? 그렇지요? 잘 안 되잖아,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것이 공익법인의 어떤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는 강화하지만 한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했구요.

단지 저희가 일단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회계기준 같은 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한 사후관리 강화 부분을 이번에 정부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 올리자는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종구 위원** 올리자는 논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 올리자는 것이 뭐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함진규 의원안도 올리는 안이고요. 여기 지금 의원안 중에서 올리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는 강화되어 있지만 한도는 저희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후관리 수준하고 한도하고 검토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이 있고, 민법이나 다른 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은 현실에서 거의 많지 않은데 지금 세법상에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공익법인 문제는 제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거든요. 1차관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봤습니다.

○박영선 위원 읽어 보셨으면 성실공익법인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된 배경도 굉장히 음습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정 재벌을 염두에 두고 성실공익법인 10%를 올린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지금 최순실 사태에서 나오고 있는 미르재단·K재단 문제도 결국은 상속입니다, 편법 상속. 편법 상속 갖고…… 대가성이 있는 돈의 교환이었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 10%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앴을 경우에 지금 재벌기업의 상속에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것 다 따져 봤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5%로 하든 10%로 하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문제가 돼요. 특혜를 주는 법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은 없애고 원래 현행법에 있었던 일반공익법인 5%를 인정해 주면서 이것

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논의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답변할 것 있으면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없애자는 이슈는 결국 주식 보유 한도를 사실상 낮추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 한도를 낮추든 높이든 하여튼 그 이슈랑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슈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사후관리의 문제는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했던 미국의 스탠더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가 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이 공익법인 제도가 지금까지 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그 정도로 올려야 되고요.

이 성실공익법인은 법 통과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재부가…… 성실공익법인으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기재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너무 모호하고 운영도 투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래대로 돌아가……

○송영길 위원 3만 4000개 공익법인 중에 인정받은 성실공익법인이 몇 개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182개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 하는 공익법인들만 신청을 하도록 해서 확인을 해 주고요. 확인을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원칙은 세금을 낼 사람들은 정확히 세금을 내고 재정이 필요할 때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지 될 이런 과세 혜택으로 해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되면 계속 모든 조세체계가 다 흐트러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 오늘 최종 확정을 지을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일회독하면서 의견을 주시고……

○송영길 위원 제 의견은 성실공익법인 폐지, 1

번 안으로……

○박영선 위원 폐지해야 돼요, 이것은.

○소위원장 이현재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정리할 것은 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서 다음 회의 때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의견만 조금 남기겠습니다.

10%, 5% 또는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는 성실공익법인을 존치하거나 폐지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요구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5%, 10%는 2008년부터 해 온 것을 지금까지 쪽 해 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이것을 확대하자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고 정부는 그것을 쪽 반대해 왔고 지금 현재 8년 된 5%, 10% 제도의 성실공익법인을 어떻게…… 풀어놓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비판이 있어서 정부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이 조건을 하나 걸고,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하는데 두 번째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이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개별법에서 회계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통일적인 회계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적인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투명성에 관련된 사후관리라든지 제재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것이고요.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주장은 지금 보유 한도가 상당 부분 10%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공청회에서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 축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것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외국의 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같이 놓고 봐야 되는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더 말씀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정리하고 특별히 의결권과 관련된 문제 또 사후관리 강화로서 미국 수준의 아주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자는 말씀 등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더 해 가지고 이것은 다음 회의 때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6페이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현재 10%인 공제율을 5%로 하향 조정하고 10억 원의 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은 의원안은 현재 10%인 공제율을 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은 현재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정부가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고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져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신고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위축될 수도 있고 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불 때는 자진신고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생각은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단편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우

리나라 상속세율 전체의 전반적인 부담과 체계를 놓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속·증여세율이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체감세율까지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속세율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아직은 과세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일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담 수준이나 체계로 봤을 때 자진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은 위원님.

○박광은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명목세율은 전체가 50%인데 아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45%……

○박광은 위원 실효세율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실제로 상속·증여 받는 사람 가운데 2.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지금 기재부 입장은 이것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는 2014년에 신고세액공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6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징세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존치가 불필요하다, 시대가 이미 지났다.

두 번째,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매월, 매분기 신고하지만 세액공제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정부가 구현되어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다.

네 번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공제가 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기타 다른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폐지 건의를 했었고요. 2015년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고액 상속 수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언제 그랬어요?

○박주현 위원 2014년, 2015년 이렇게 국세청이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20~40%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상속세만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신고세액공제 제도만 없애도 4800억이 세수가 증가합니다. 엄청난 세수 증가가 오고요.

특히 삼성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이견회 회장이 사망하시는 경우에 추가로 6000억이 더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문제에서 보듯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이 한 3조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합병을 다시 무산시키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삼성에서 이익을 얻었던 것 좋다, 경영권 방어했으니 그 정도의 그

것을 세금으로 회수한다라는 그런 모양을 보여 주는 것이 정부로서도, 삼성으로서도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단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일본이 우리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세율 자체는 높은데요, 일본이 유일하게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일본은 상속인별로, 재산으로 합니다. 우리는 합산이고, 상속인별로 하니까 실제로 상속인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의 세율 부담은 저희가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박주현 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제가 또 많아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논의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어도 우리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은 소득세까지 감안한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속·증여세의 부담 수준 자체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나 이렇게 볼 때 하여튼 우리가 높은 수준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계속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아까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6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60년대하고…… 지금 증세 행정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거의 알파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전체 세원 파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세금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상속·증여세를 한 10억 범위에서 내는 사람들은 이게 도움이 돼요, 사실 신고를 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감액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고. 소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하여튼 재산이 많은 분들이 상속할 때는 그런 공제를 해 주

지 말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100억이 좋은지 한 50억 정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하의 경우에는 10%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절충안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광온 위원** 참고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매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저희가 말씀 하나 드리면, 그 통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른 나라랑 상속세·증여세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도 상속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부담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소위원장 이현재** 예,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상속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상위 10%만 보면 그분들도 실효세율이 21.9%, 실효세율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세에 있어서만큼은 실효세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나 이런 것은 통상 자기 소득이 계속 일정한 수준에서 실효세가 의미가 있는데 상속세는 그야말로 원 포인트거든요. 한번 상속받는데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 딱 정해진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사실 큰 비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의미가 왜 없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용수 위원** 조금 전에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속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아주 극소수고, 실제 부자들 아니면 상속세 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공제가 워낙 많아서요.

○**엄용수 위원** 그래서 신고세액공제는 부자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률적인 공제는 다소 불필요하다는 생

각을 저는 가지고, 그 대신에 또 상속세 과세표준의 한계에 가까운, 과세표준에 가까운 그런 중산층 이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하는 기존 10%를 하고,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넘어선 데는 훨씬 더 줄여도 좋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종구 위원님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립 위원님.

○金光琳 위원 기본적으로는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가는 것에 찬성하고, 그 금액을 어떤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한번 정부에서 판단한 자료를 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고세율은 50%인데 실효세율은 21%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제실장님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의미 있고 없고 간에 왜 50에서 21로 떨어지는지 하는 데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참고로 같은 기준으로 일본·미국·독일·OECD 평균의 실효세율 통계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 48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 숫자를 내줘 봐요, 삼성 것을 안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신고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서 바로 깎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입니다.

○金光琳 위원 이 정도 됩니까, 연 4800억?

○박주현 위원 예, 연 4800억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 가지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4700억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료를 정리해 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박주현 위원님 또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세청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각국의 실효세율 또 정율제를 정액제로 가는 것, 이런 내용을 포괄해서 자료 정리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더 해 가지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송영길 위원 이전에 산출액 10%로 공제된 조세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상속·증여세 합해서 한 4700억 됩니다.

○송영길 위원 연 4700억?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소위원장 이현재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좀 드리세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각각 자료를 드려서 내용을 파악하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입니다.

현행법은 가업·영농 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받은 과세가액을 산입하여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서 상속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감면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납세자의 책임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요건을 오랫동안 준수한 기업의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액 가산기간을 사후관리 요건 위반 이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내용을 9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이 부분의 이자부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가산세 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상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할 경우에 추정액을 경감하는 제도하고 배치가 돼서 오랫동안 준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자부과액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후관리 위반일부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위반일부터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합리적인 것 같은데, 위반일부터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오랫동안 조건을 지킨 사람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위반을 하면 바로 과세를 하는데 위반일부터 하는 게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게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한 7년, 8년, 9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킨 사람은 마지막에 가산세를 더 많이 내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논리적으로는 검토의견으로 수정안을 주신 게 맞아 보이는데 그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사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김현미 의원님께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사실 확인을 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축소 및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김관영 의원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 변동에 따라서 현행법의 가업상속 적용대상 기업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매출액 요건을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강화해서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상속공제액을 재산가액 100%에서 70%로 인하고 공제 한도를 현행 200억, 300억, 500억 원에서 각각 100억 원, 150억, 3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가업 요건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면서 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축소하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000억 이상의 기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시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세평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별로 적용 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김관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개정하게 되면 482개 기업이 축소가 되고요, 박광온 의원안 같은 경우는 330개 기업, 박주현 의원안으로 하게 되면 2529개 기업이 축소가 되는 반면에 정부안으로 하게 되면 1351개가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방향의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 상향 등에 대한 제도 변화, 경제여건 및 개별 기업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

해서는 정부는…… 크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장수기업들이 외국에 비해서 좀 적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업의 업력이 짧은 상황에서 초기기업생존율이 외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장수기업이나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업의 업력이 길수록 고용 능력이라든지 납세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서 어떤 기업이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장수기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현행 제도는 2013년도에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과 야당 의원님들 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되어서 지금 현행 제도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제도는 2013년도에 여야가 정부안과 야당안을 논의해서 나온 조정안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 경과를 더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가업상속공제 부분은 일단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자는, 이걸 그동안 8년간의 경제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10조 원으로 올린 전체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게 올라간 가운데서 지금 적용되는 기업이 얼마인지는 지금 저희가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로 보면 한 몇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지분율이나 이런 식으로 좀 엄격한 요건을 다 하면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공정거래법 개정과 연계를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지금 현행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혜택을 본 기업이 얼마 정도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는 연간 한 70개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앞으로 이게 좀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요……

○박주현 위원 왜냐하면 상속이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계속 늘

어나니까……

○송영길 위원 저는 제 의견 좀 이야기하겠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예,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길 위원 우리 박주현 위원님은 더 축소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 법의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 법이 현행대로 일단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고, 이것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더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게 2007년에 1억 원 한도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취지가 지금 추경호 의원이 얘기하시는 그런 명문기업처럼 정말 오랫동안 가업으로 이어 온 그런 기업들이 상속세 현금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강소기업을 키우자 이런 취지로 해서 1억으로 시작했고 그때 장병완 의원께서도 처음의 취지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갑자기 2008년에 1억 원 한도가 30억으로 오르고요, 그다음 해에 100억으로 오르고, 2년 후에는 300억으로 오르고, 3년 후에는 500억까지 이렇게 정말 8년 만에 500배가 올랐어요, 500배가.

그리고 대상 기업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히 강소기업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한 10년만 기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상속세가 없는 정도의 그런 이상한 괴물 제도가 되어 버렸고요. 저는 이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속세 현금 납부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연부연납제도가 있어서 상속세를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30억 한도로 해서 중소기업에 한정을 하면 이게 상당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원래 2008년의 1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에 30억 한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 상속세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줄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냥……

지금 우병우 사건에서 보다시피 기업이라는 게

그냥 가족기업에서 거의 사유화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데 상속세까지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이것은 뉴스타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대물림 이런……

거기서는 건물임대차업이 또 이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건물임대업이 들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임대업은 아니고 부동산 관리업. 중소기업 범위에 그때 이제……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임대관리업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관리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됐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가 이것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도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는 또 요즘 선진국에 보면 부동산……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을 보면 부동산 전문관리업자를 육성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업종이 어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이 업종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업종을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원래 가업 상속이라는 게 사실 노하우가 제대로 쌓여서 이것이 소유주가 바뀌거나 지분이 변화되면 그 기업의 계속성·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이런 경우를 보호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만든 제도입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해들이 많으신데.

이게 '9988'이라고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88%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거나 예뻐서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동산임대업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고요. 주로 제조업 일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것은 주로 과세이연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마지막 회계 정리할 때는 상속이 되지만 주로 과세는 대물림하고요.

○송영길 위원 마지막 할 때는 상속세 부과하지요, 그때는?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럼요. 이것은 주로 과세이연이고……

○송영길 위원 유보, 이연……

○소위원장 이현재 예, 과세이연이 중심이고 마지막 정리할 때 이거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중소기업만 한정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커서 글로벌로 나가서 독일처럼 히든 챔피언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범위가 업종에 따라 다름니다마는 한 1300억 전후로 되어 있는 것을 3000억까지 하고,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되려면 외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3000억까지 되어 있는 것을 더 올리자는 논의가 지난 국회에서 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 기업을 정리할 때입니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주로 과세이연 형태로 가고, 다만 여기서 요건을 너무 완화해서 이게 부동산임대업처럼 이렇게 전통기업을 승계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키우자 하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소위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3000억을 또 키워 가지고 본회의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유명한 김관영 PPT를 탄생시켰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그때 5000억까지……

○송영길 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박광온 위원 5000억으로 올려서 본회의 갔다가 부결됐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범위를 3000억에서 5000억까지 가자고 그랬었지요.

○金光琳 위원 어렵게 이 논의에서……

○송영길 위원 김관영 의원이?

○金光琳 위원 아니, 우리가 전부 다 해 가지고, 김관영 의원도 그때 세법 소위였고 그래서 이렇게 쪽 했는데, 어렵게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되고, 그런데 본회의 가 가지고 조금 보기는 다른데 설명을 해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이것은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논의가 그때 주로 많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이현재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관련되어 가지고 그쪽의 상속·증여 이것을 봐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중소기업, 명문기업을 키우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

다만 두 가지 확인할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관리하는 사람하고는 주체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부동산관리업은 사실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金光琳 위원** 예, 관리하는 업은 아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법에 되어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는다는데 명문장수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건 다음 회의 때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리고 세부 기준은 제가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아버지가 몇 년 이상 경영한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 그래서 조건을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10년이면 다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쥬 보시지요.

○**金光琳 위원** 독일이 제일 세계 하고……

○**이종구 위원** 뭐 독일 것도 주면 더 좋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독일하고 일본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쥬 보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3000억에 해당되는 회사가 몇 개가 돼요?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80%가 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넘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지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중소기업 중심이니까.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0억에 해당되는 이 회사의 숫자가 제 기억에는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모든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중소기업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박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제가 그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체 수로 따지면 한 300만 개 되는데 99%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 개념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일정 한도로 대기업은……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법의 포인트는 가업 상속이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가업 상속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기업의 약 9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상장회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회사가 가업 상속이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아니고요.

세제실장,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모든 기업이 무조건은 아니고요,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 기업은 숫자가 다를 겁니다.

○**박주현 위원** 거의 모든 기업이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지만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 조건이 있어서……

○**박주현 위원** 아니, 10년이면 다 된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고요, 10년 경영했으면 다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세제실장이 좀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데 매출액 3000억 미만까지의 중견기업도 일부 들어간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 그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자로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상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50%고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지분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0%가 넘어가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분이 30% 넘는 경우는 좀 작은……

○박영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장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인데, 저는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적용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가업 식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장기업만 적용이 될 수가……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상장기업이 가업 식으로 유지되는 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분이 30% 넘는 경우……

○박영선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문제는 5%, 6% 가지고 황제 경영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30%가 넘는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근본적인 것을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현 위원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고, 지금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잖아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3000억 매출 이하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거의 모든 기업에 500억까지는 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하여튼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차이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 그러니까 상장기업이라도 이 제도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독일의 다른 것도 같이 다 들여오면 이것을 찬성할게요.

○박영선 위원 기재부가 주장할 때 보면 유리한 것만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은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이 분명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가 독일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사후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그

리고 그 가업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소득세가 엄청 높은 기반하에 독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거의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금 잘못 들여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면 이 부분의 부작용이 크니까 부작용 때문에 이 제도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기업들의 업력이 짧고 장수기업은 늘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수기업의 경우에 고용이라든지 납세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가 짧은 상황, 업력이 짧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인위적인 어떤 촉진제도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업 상속이라든지 장수기업들을 더 촉진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에서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10년이라는 게 엄청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30년, 50년 이렇게 돼야 장수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장수기업을 좋게 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끊임 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30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독일의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독일 것을 하려면…… 독일에서는 3대, 5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하면 다 해 줍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부에서 확인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주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독일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과도한 면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독일의 예를 들려면, 사실 독일 기업이 그렇게

안정성을 갖고 또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거기에 노조의 경영 참여라는 아주 근본적인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오래 전에 현장에 있다가 한 일이 년 전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아주 특수하게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커진 줄은,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주현 위원 깜짝 놀라셨지요? 8년 만에 500배가 늘었어요.

○엄용수 위원 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하고 재산을 유지·존속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이미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것은 여러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흐름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재협의하도록 하고, I 권의 법인세로 도로 돌아가서 안 된 부분을 논의하지요.

이 법인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제안된 법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정부 입장 듣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해서 계속 논의하는 과제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I 권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광운 의원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는 소득세법에서 어제 같이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3페이지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분할법

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신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근거로 분할에 의해서 분할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받게 되면 그 지분 비율만큼 의결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된 법인의 지배구조가 달라지고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는 법인 분할을 통해서 법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적격분할을 할 때 법인의 의결권 구성이 변경되어 법인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배정받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체제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에게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봐 가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크게 보입니다.

세법은 이런 상법의 입장에 따라서 단순 조직변경에 불과한 부분에 있어서 적격분할을 인정해서 분할 시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상법과 달리 그 부분은 과세이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게 세법의 전체적인 역할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과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의 논의를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박영선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상법에서 그런 식으로 금지하는 법이 나오면 좋을 텐데 상법은 원래 기본 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이어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그러니까 분할 대가 전체가 아니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일용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박영선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말씀 한번 하세요,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저는 얘기 다 듣고 할게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박영선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 들어왔네. 잘 모르겠어요.

○**박영선 위원** 이것을 제가 낸 이유가요, 지금 승계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행법대로는 해법이 잘 안 보이니까 자사주 인적분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가려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을 미리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항상 재벌기업들이 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법을 먼저 낸 것인데, 상법 제369조제2항에 보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지고 대주주 일가들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구멍으로 몰리듯이 자기들이 계속 뭘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뭘 하면 법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는 피해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012년까지 신고된 지주회사 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전환된 회사가 36개 있는데요, 이 36개를 보면 지주회사 전환 이전과 이후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비교해 보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16.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식에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대주주 일가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이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금의 추세하고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9년에 국세청이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비율에 따라서 분할 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그래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이미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법안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할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국세청 말씀하시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돼야 될 논의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법은 상법에서 인정된 배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해서 같이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 단계든 주주 단계든 이 부분을 빼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고 해서 과세체계나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국세청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그런 입장을 이미 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것을 또 활용해 가

지고 편법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이종구 위원** 그런데 그런 점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사를 하고 M&A를 하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살 길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를 해서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현대 같은 데는 분사 형태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떤 데는 또 M&A를 해서 살 길을 찾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길은 좀 더 주는 것이 좀……

○**박영선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물적분할로 하면 소주주들이 피해를 볼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인적분할을 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직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허용하는 것이, 세법은 거기에 중립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하는 이슈는 상법 논의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국세청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다시 확인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 내용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10%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배당액 인정비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의원안은 적용 대상을 현재 자기자본 500억 초과에서 100억 초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제도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배당액 인정비율을 삭제하고 제도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배당액 인정비율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수탁기업과의 소득분배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배당액 인정비율을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고 임금 증가액 인정비율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배당액 인정비율 축소 또는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환류소득 차감 항목 중 배당액에 대해서 인정비율을 축소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및 임금 증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안은 미환류소득 차감 항목 중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 가중치를 15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당액과 임금 증가액의 인정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적용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입니다.

김영진 의원안은 현행 자기자본 500억 초과에서 100억 초과로 기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 3600개의 법인이 이 적용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는 약 1만 1000개의 법인이 추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까지 동 제도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시행된 지 1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적용기한 조정 문제는 추경호 의원안은 적용기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연장하고 있고, 김영진 의원안 및 박주현 의원안은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7년에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

석을 한 다음에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배당액 인정비율을 축소하고 삭제하는 부분, 가중치를 하향하는 정부안도 포함하고 배당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삭제하는 안은 지금 현행 제도 자체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으로는 배당 삭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중치 부분은 정부가 고민을 해서 가중치를 냈는데 이 배당 가중치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소득 금액과 세율 인상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적용기한 조정의 이슈는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더 받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서 일몰 연장 등을 포함해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저는 하여튼 이 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폐지.

이것이 과세 방식이 복잡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할 거나 또 임금을 어떻게 가져갈 거나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결정인데 단기적인 세제로 이것을 조정하고 바꾼다 하는 것은 반대고.

특히 이것이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세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 아무 별의미가 없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하시지요.

○金光琳 위원 원래 환류가 투자·배당·임금이 1 대 1 대 1로 돼 있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제 임금 인상은 1.5로 하고 배당은 0.8로 했는데,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투자는 별로 없고 임금 인상도 별로 없고 배당만 해 먹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배당이 많고 투자는 좀……

○金光琳 위원 그렇게 평가가 되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지 한번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배당을 아예 없애 버려라, 배당은 인센티브를 안 주도록 하고 임금인상하고 투자만 고려해라, 또 어떤 의원님은 0.8로 되어 있는 배당을 0.5로 줄여라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1이다 0.8이다 1.5다 하는 것을 법으로 해야 되나요? 시행령 아닌가?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지금 정부안은 법으로 넣어 왔습니다.

○金光琳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했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시행령에 있는데 이것은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 올렸습니다. 차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光琳 위원 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위원 외국인도 많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배당은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혹시 예상 세수 좀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으로 했을 때 한 1900억 정도 세수증으로 나왔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류세제를……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아, 현재 세제요?

○박주현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현재는 이것을 1년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 못 쓰면 내년까지, 이렇게 2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박주현 위원 예상치.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지난해 1년 기준치로 해 가지고 세금 낸 게 한 506억쯤 되는데 유보시켜 놓은 금액이 한 4조 8000억 정도 됩니다. 4조 8000억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환류를 안 하면 4800억이 추가로 과세

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金光琳** 위원 내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내년에 낼 때.

○**박주현** 위원 지금 배당을 없애거나 줄여야 된다는 데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배당만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비율을 혹시 알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金光琳**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박주현** 위원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위 10%가 구십몇 %를 가져가는 초양극화적인 그런 분야여서……

그리고 저는 이종구 위원님이 480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은 거기에 연동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당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이느냐, 없애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이 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존치하여야 될 성질의 규정은 아니고, 단지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배당에 치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금이나 투자에 더 치중할 것이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현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유연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담기보다는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더……

○**金光琳** 위원 아까 의견은 말씀 안 했는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시행령으로 두시자는 말씀이지요?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배당을 축소하자, 정부안도

축소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축소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 또 이것을 시행령으로 그냥 두자는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더 정리해서 이것도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주현** 위원 외국인 주주 비율도……

○**소위원장 이현재** 외국인 주주 비율도 자료 확인하시고요.

○**박주현** 위원 외국인이 주주가 배당을 가져가는 액수의 비율로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설명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하여 많은 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법인세율 변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9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20%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지출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제 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1년 대비 소득세는 크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해서 소득세를 정비하는 등 다른 세목에서는 세수가 증가해 온 반면에 법인세는 없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기업의 조세감면은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조세감면의 상위기업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현행 최고구간 22%의 법인세율이 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고 조

세부담률도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인상을 할 경우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주요 선진국들도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4%로 OECD 평균인 2.9%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수를 볼 때 추정 예산 당시 전망보다 7조 내지 8조 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7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상당수가 초과 수납될 예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은 낮은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찬반에 관한 각각의 의견의 논거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 명목세율 인상에 앞서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추세를 감안해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세제 지원 항목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조세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이종구 위원 조세지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조세지출, 그런 말도 쓰는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조세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종구 위원 조세감면인가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이종구 위원 조세감면이라고 그러지 뭘 지출이라고……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여기 반대 의견에 쓰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인식과 지금까지 각 나라의 어떤 조세경쟁력 측면, 그다음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성의견 중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지만 올해 2016년은 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세 체계 자체가 지금 다단계 누진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에 적절치 않고 국제적인 추세가 주로 단일세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법인세율 인상과 다단계 누진세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이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다들 말씀을 안 하셔……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하세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단계를 다단계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까지의 계속 2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2단계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세 인상·인하의 논란이 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결과는 기업소득 비중만 엄청나게 늘고 사내유보금만 800조로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정상화, 원상 회복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1억 원 이하에 13%인가 이렇게 하고 1억 원 이상은 25%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되 물가인상이 됐을 것이니 1억 원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인하된 10%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의 25%로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구요. 사실 이렇게 되면 세증 효과도 상당히 큼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의 반대 논리로 전경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3조, 이 정도 늘리려고 그렇게 막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서 마치 온 기업을 적으로 모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사실 그렇지요,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겨우 3조 걷는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안들이 대개 2.4조에서 한 삼점 몇 조, 4조까지 정도의 세증 효과가 있던데 제 안에 의하면 7.5조 정도의 세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소득세에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 정비를 해서 그리고 세율 일정 조정을 통해서 한 3조 정도를 마련하고 법인세에서 7조 정도 마련해서 한 10조 정도는 마련을 해야, 지금 적자 재정이 연평균 33조인데 연평균 23조 정도의 적자 재정 정도는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말씀하시지요.

김광립 위원님.

○金光琳 위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영선 위원 제가 할게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영선 위원님, 하세요.

○박영선 위원 세상이 늘 정반합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MB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법인세를 낮추는 바람에 그 반대 논리가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합,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법인세를 MB 정부 이전으로 환원시키느냐, 그게 저희 당의 당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1%를 올려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

금 유보금이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하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어떤 반대 논리를 다 흡수하더라도 법인세를 1% 정도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이것을 세금으로서 쓰는 게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 주고서는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기부금 형태로 걷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 법안은 매년 1%씩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올해 1% 올려서 그 결과를 보고 또 그다음 해에 1%를 추가로 더 올릴지 말지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에 김광립 위원님.

○金光琳 위원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든다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내린 것을 환원시킨다 이러는데 우리 국내에도 보면 65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45%에서 어느 한 정부도 안 거르고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와.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많이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또 바깥으로 눈을 돌려 보면 지금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쪽은 있어도 인상을 하자고 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도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렇게야 되겠습니까만 그런 게 바깥의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대 때 소위에서 계속 법인세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홍종학 위원님, 박원석 위원님 주장도 하시고 쪽 했는데 결국은 감면해 주는 것부터 일단은 걷어 내고 그래도 돈이 더 안 들어오면 한번 보자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그동안 해 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바꾸었다가 그것도 2014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4%로 되어 있던 것을 17%로 올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법인세

가 최고세율이 22%입니다마는 실효세율이 17%대에서 금년에는 19.6%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금년 이 현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일단 작년 세수보다 금년 세수가 8월까지 20조 좀 더 넘게 들어왔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7조 1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9월에는 숫자가 어떤지, 왜 세제실에서 9월 숫자를 안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9월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그동안에 세액공제 중심으로 해 왔던 감면을 없애고 나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연 4조 2000억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또 한번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법인세가 7조 1000억이 더 들어온 것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면 없애는 것,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정보 이동상황을 국세청에 100%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한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오고,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에 조세부담률도 2007년도에 가장 높았던 19.6%보다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복지 재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해서 세수를 더 걷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분자인 세율을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분모인 GDP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과표가 되는 영업이익이 더 나도록 하느냐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과세·감면했던 부분의 효과가 4조 이상 나고 있고 이것은 의원님이 민주당 안에서 제출한 연 3조 5000억 범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법인세 비과세 없애고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금년에 원샷 쇼크인지 아니면 체제가 되어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법인세·소득세 공히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을 쫓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니고

당을 떠나서 인상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국회가 여기 앉아서 손쉽게 세법 세율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율을 인상할 수 있고 또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또 복지 분야, 쓸 곳 많습니다. 언젠가는 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세율을 올렸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수와 관련해서 오늘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3/4분기의 상장법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9% 정도 줄었습니다. 외형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4% 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단가가 원가율이 떨어지고, 특히 회사들이 단도리를 많이 한 겁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업이익은 올랐는데, 제가 전에도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년 3월 달에 있는 법인세 정기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은 떨어졌지만 과표 자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수는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세수가 많이 걷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세율을 인상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삼사 %의 성장률만 해도 법인세 인상하는 부분에 반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세율을 인하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율을 인상해서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세후의 수익률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는데 투자 수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세율을 올린다면 투자에 반드시 역효과를, 부작용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역시 고용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데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세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투자 수익 차원에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 법인세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라고 논쟁을 할 때 지금 가장 큰 기준점이 뭐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다들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하는 게 경기 회복 내지는 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경제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불신과 상실감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우리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조세 기술적으로 지금 논의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경기 회복에 뭐가 더 도움이 될 거냐, 법인세를 인상하면 이게 마치 투자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세후이익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뭔가 경기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인세 인상하자는 이유가 뭐니까? 그냥 단순히 인상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확대 재정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재정 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이 별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자산가치만 상승시켜서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제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세수 확보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런 것도 맞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재정 확대를 그냥 약간 늘린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고, 과감하게 하려면 세수가 그냥 조금 늘어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법인세 인상의 문제는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좀 하자라는 것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인화된 상태인데, 그 반대로 법인세를 인화된 상태 그대로 놔뒀을 때 이게 오히려 경기 부양에 더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법인세하고 투자하고 계속 상관관계를 얘기합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전체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뉴노멀시대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 조금 더 깎아 준다고 해 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에 전 세계 경기가 아주 호황일 때 그럴 때에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비슷한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에서는 세금이라도 조금 깎아 주는 데다가 투자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가 됐던 거지 지금처럼 어디에다 투자해도 별로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좀 더 깎아 준다고 거기에 가서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투자할 만한 데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만한 데는 왜 생깁니까? 수익이 나는 곳은 왜 생기는 거냐고요? 뭔가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출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둘째치고 내수라도 활성화시키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 활성화 왜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 워낙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거예요? 세금 깎아 준다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 법인세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것도 인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깎아 주

는 것 자체가 별 효과도 없었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 부작용으로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하자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우리가 조세정책에서…… 저도 원칙이야 법인세 단계를 단순화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또 어려운 기업들한테까지 부담을 시키기는 조금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누진적으로 단계를 나누자라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단 몇 %를 하더라도 이걸 단계별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경제 구성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세는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정상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가 법인세의 원칙이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걸 떠나서 누진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 같은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인세를 지금 상황에서 올리자는 분들의 요지는 지난 MB 정부 출범할 때 3%p를 낮췄는데 그 사이에 투자·고용에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복귀를 하자, 그래서 그 재원으로 다른 부분에 쓰자 이런 취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OECD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OECD 평균이 30%였는데 한국이 28%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p 낮은 상황이었었는데 그 뒤에 DJ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 3%p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OECD는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낮췄습니다. 한 6%포인트 낮춰 가지고 지난번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의 법인세가 25%고 OECD 평균이 23.9%,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MB 정부에서 원샷으로 3%p를 그때 낮추니까 다시 우리는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투자·고용을 얼마큼 확대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 국민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OECD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조세경쟁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주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느는 것인데 그건 원유가가 낮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OECD 통계 얘기하시니까, 제가 OECD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 통계 다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무역의존도하고 관계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무역의존도라는 그 지표 자체가 완전히 약간 엉터리…… 분모에는 GDP가 있는데 GDP라는 게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분모에서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서는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뭔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무역의존도하고 법인세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 확

보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거기에 따라서……

OECD 평균이 22.7인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높지요. 그런데 OECD 34개국 중에 인구가 많은 10개국의 평균은 이십구점몇 %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많은 10개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누진성이 과연 약한 것인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불황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이래서…… 또 좀비기업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원이라고 하는 법인소득 자체가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OECD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게 OECD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이게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다른 나라들의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랑 동일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인 불황 문제, 그 사회안전망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평범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지금 고통이 가장 심각한 계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업들이 사회부담금의 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낮추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구조조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 안전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면 세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거기다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하려면 약간의 세수 증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맥락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OECD를 너무 생각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법인세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돈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쪽에 좀 더 부담을 시켜서 이 문제를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이것부터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법인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만 올리는 게 맞느냐 아니냐, 얼마나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고소득,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한테 많이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우리가 재논의를 하더라도요.

○소위원장 이현재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25%에서 24, 22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효과, 투자 유치, 투자 증대라고 하는 효과들은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요, 실제로 그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수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가 못 되잖아요.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은 제고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출산율과 육아·보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집중적으로 빨리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해도 소비할 여력도 없고 유효수요가 없어서 아예 이제 노동자로…… 그러니까 일할 노동력도 절대 노동력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쪽에 집중을 해

줘야 기업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인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지적된 자료나 이걸 잘 준비해서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I 권 95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중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법인세법 정부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 허용입니다.

현재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자산이 피합병법인에서 합병 법인으로 옮겨 갑니다. 옮겨 갈 때 그걸 양도로 안 보고 과세이연을 시켜 주는데, 현재 요건을 주고 있는데 요건 없이도 그런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현재 완전모회사가, 그러니까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합병할 때는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특례 대상에 동일 모회사가 100%를 지배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도 주주 간의 이익분여라든지 조세회피 소지가 없기 때문에 과세이연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병 시 자산처분손실의 공제 제한을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결손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량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해 가지고 그 결손금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취지로 자산평가손실이 많이 발생해 있는 법인, 예를 들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훨씬 떨어져 가지고 손실이 내재화되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처분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이월결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 공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산평가손실이 있는 법인을 합병했을 때 합병 전, 당시에 내재되어 있는 손실만 공제를 제한하고 합병 후에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합병할 때 과세이연 요건 완화입니다.

분할합병이라 하는 것은 어떤 법인이 어느 특정 사업 부분을 빼내서 기존에 있는 다른 법인과 같이 합병하는 겁니다. 그런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요건에 보면 분할대가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주식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상법이 바뀌어서 삼각분할합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반영해서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때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적분할하고 현물출자 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어떤 법인이 어떤 사업 부분을 빼내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설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3년 내에 폐지를 한다든지 물적분할한 출자 법인이 출자를 통해서 받은 신주를 50% 이상 처분하게 되면 과세이연한 부분의 전액을 다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추징하는 요건을 좀 완화해서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3년 내에 하락하게 되면 전액을 추징하고 3년이 지나서 그 지분이 하락할 때는 지분 하락한 부분, 그러니까 처분한 주식 부분만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에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입니다.

이건 아까 소득세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할 때만 국내에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과세하는 걸로 조약에 되어 있으면 그 조약을 반영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이것도 아까 소득세법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유사한 취지입니다. 본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이라든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한 절반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신고납부와 관계없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라든지 지급명세서 제출,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현재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입니다.

현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걸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매 사업연도마다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법인세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80%만 공제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 확대입니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 이런 걸 지급받을 때 조약에, 이걸 제한 세율입니다. 원래 본세율이 20%인데 조약에 따라서는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청구기간이 3년인데 이걸 내국법인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내국법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전문위원,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구조조정 부분이

라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일단 두 번째, 합병 시 자산처분 손실공제를 합병 후에 시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정해 주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러니까 모자회사 간뿐만 아니라 자자회사 간에도 이것을 같이 과세이연을 허용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좀 더 오셔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세 번째의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세 번째는 상법 개정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물적분할·현물출자 시에 승계받은 사업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에 익금은 산입하고 또 3년 이내에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같이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폐지하는 경우하고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똑같이 3년으로, 그러니까 '3년 이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하고, 예를 들면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을 기간을 좀 길게 한다든가 이렇게 차이를 뒤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렇다면 굳이 2개를 따로 할 필요도 없지요. '3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항이 만들어질 텐데 만약에 그걸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건수가 많으니까 우선 앞 페이지의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앞의 재논의를 하시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제일 앞의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할 때 말씀드린 부분은 완전모자회사 간이나 동일한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회사 간에는 이런 조세회피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와 내가 100%, 100%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라 조세회피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분할합병 과세이연 요건 완화는 상법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허용해 주는 내용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그다음에 물적분할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분할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그대로 있다, 단지 조직만 쪼개져 가지고 이리 갔을 뿐이지 사업이 계속된다, 그다음에 조직이 한 몸으로 있다가 쪼개졌지만 주주는 같다, 사업도 그대로 있고 주주도 그대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 사후관리를 지금 3년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안 하면 전액 추징을 하겠다, 3년 지나면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징을 하겠다는 그런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걸 3년 기준으로 합쳐야겠다, 통일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말씀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사실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병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손실이 나는 기업이 있고 이익이 나는 기업이 있으면 이걸 합해 가지고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상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금년 3월 시행입니다.

○박영선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수상하거든요. 제가 인적분할 법안을 낸 이유도…… 이것 굉장히 수상해요. 왜냐하면 상법에 고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물적분할하고 인적분할 부분을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에 원샷법이 통과됐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이 고쳐졌다고 해 가지고 과세 혜택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막 열어 줘도 되는지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법이 올해 이번 달부터 시행됐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3월 달부터 시행

됐습니다.

○박영선 위원 3월에 시행이 됐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영선 위원 그러면 2015년, 작년 가을에 통과된 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작년 11월에……

○박영선 위원 11월에 원샷법 할 때 같이 다 한 것…… 시기가 그때네요?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박주현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보니까 원래 삼각합병이라 그래 가지고 12년 4월에 개정된 상법은 합병할 때만 모회사의 주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박영선 위원 그것은 제가 있었을 때거든요. 제가 법사위에 있었을 때 그 상법에 손을 대려고 굉장히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못 했거든요. 제가 떠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손을 대고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합병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할합병도 합병과 사실상 같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상법에서도 개정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그게 재벌회사에서 먼저 상법에 손을 대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손을 대고 그리고 원샷법을 하려고, 그 로드맵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기업에서 들고 다니는 것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것의 일환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가산세 부담 완화해 주는 것,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든지 각종 서류 그것을 전부 다 50%씩 감면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지요? 그동안 실익이 없었다 이런 건가? 서류를 잘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는 납세 편의나…… 이게 본세하고 관계없고 하나의 납세협력의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金光琳 위원 이것 전부 다 합치면 돈은 얼마

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십억 정도의 돈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金光琳 위원** 예,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이런 게 100억이 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연간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이 한 270억 정도……

○**金光琳 위원** 그러면 135억 까 주는 거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절반으로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대로 불용이 된다고 본다면.

○**金光琳 위원** 전체가 270억이라고 그러니까 백삼십억 정도 감면해 주는 건데……

○**엄용수 위원** 이런 합계표, 명세서 제출 의무는 일종의 행정에 부과된 협력의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하게 매긴 것을 납세자들에게 완화를 시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琳 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허들을 걸어 봤을 때는 하도 서류 안 내놓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이렇게 1%, 2% 매겨 놓은 건데, 사실 ‘이래 보니까 거의 다 잘 내더라’, ‘괜찮더라’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100억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용수 위원** 제 생각에 각종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든지 또는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회사들은 잘 제출을 해서 큰 무리가 없는 데, 오히려 자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거나 이런 영세사업자들 그리고 누락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위원** 아까 4년간 평균이 연 270억인데 최근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4년간 쭉 줄어 들고 있는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증가도 하다가 내려도 가다가……

○**金光琳 위원** 비슷비슷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제일 많은 게 지급명세서 제출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요, 변동상황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월급 준 것, 이자 배당 지급한 것, 기타소득 지급한 것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사실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런 명세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원래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낮춰서 잡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증세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세액 기준이고, 이것은 세액이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그러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금액의 2%면 꽤 큰 금액이지요.

○**박주현 위원** 아니, 지금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출을 잘하고 있으면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잘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영세사업자들이 그것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면제를 해 주는 범위를 한다든지 해야지 가산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세감이 분명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합의하기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시지요. 97쪽도 있습니다.

○**金光琳 위원** 대답 없으면 빨리 넘어가.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 문제,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가 상법 개정애 들어 있는 문제,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사후관리 완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 나온 가산세 부담 완화 문제, 4건은 계속 재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합의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오전에 이어서 소위 심사자료 II 권의 14페이지입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우대 범위 축소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증여의제이익 산출 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것이고, 김관영 의원안은 자산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전체에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증여의제이익 산출 시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폐지하거나 자산 5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 우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2013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증여의제이익 산출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 점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심사 시에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장 등을 통해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수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다량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특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두 가지 사안인데, 앞의 부분의 중견기업 우대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도 보고드렸듯이 2013년도에 원래 조세소위에서, 저희 정부는 그때는 원래 중소기업만 들고 나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계보유 비율이라든지 정산거래비율을 조금 더 완화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 현행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볼 때 이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안의 자산 5조 원 초과

기업집단 부분은 일단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공정거래법이.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개정이 되면 어떻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개정되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연주 위원 올라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법제처 심의 중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연주 위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의 중이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심의 중입니다.

○이연주 위원 그런데 꼭 그것을 기다릴 필요 있나요? 이것 먼저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이 되면 시행령이니까 10조 원만 앞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이 어느 기업집단 인지는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산 5조 원 이상은 얼마고 10조 원 이상은 얼마다라고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연주 위원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논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10조 원으로 시행령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업이 도대체 5조 원인지 7조 원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서 5조 원하고 10조 원 투 트랙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5조 원짜리를 차용해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박주현

의원님하고 김관영 의원님 두 분이 조금 다른 얘기로 내셨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 얘기는 김관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방금 자산 5조 원 맞추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관영 의원이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지금 박주현 의원안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기획재정위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하고 완화를 했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그때도 논의를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줄이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의 안정성이나 그 당시의 개정 취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사실 2013년에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이 설득력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때 개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기업 규모하고 이 규제는 무관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 규모가 작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별해서 적용할 어떤 논리적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맞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그때 논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고쳤으니까 잘못돼도 그냥 가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얼굴이 좀 뜨겁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원칙으로 돌아가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규제는 기업의 규모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주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제재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편법에 대한 제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마 예전에 2013년에 그렇게까지 해

준 때는 우리가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들은 그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우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우대 이런 것은 다른 우대책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 중세법상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규모하고 무관하게 그냥 규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대 범위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도 우대하는 것으로 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규모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박지원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처음 제정 당시의 이유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지분 분산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과세할 때 지분 분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부담 자체는 훨씬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정이 되었다면 의미 있는 규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단지 지금 기준에 의해서 매출액 기준만 있는 이런 부분을 자산 규모로 확대해서 병용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하실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3년도 그때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때 당초 정상거래비율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는 게 종전 제도였는데 그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기를 일감몰아주기라는 제도 자체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중소·중견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만 과세 강화를 존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다시 한번 강조드

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이것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에 대해서……

보통 모든 제도들이 정책목적에 의해서 도입이 되지만 중소기업에 우대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대기업에 대비해서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규제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감몰아주기라는 게 마치 기업에 있어서의 금수저·흙수저 논란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경제 민주화를 해치는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나 국회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3%, 5%, 10%,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러 회사가 있을 텐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30%, 40%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경우는 수는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관련된 회사가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많게는 10개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했을 때는 거기에서 유불리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중견기업이라는 게 언젠가부터 굉장히 유행했어요. 사실 중소기업, 대기업 해야 맞는데, 어느 나라에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하지 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따로 나누는 그런 개념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최경환 장관 시절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중견기업을 들고 나오면서 이것을 중소기업에 붙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에 얼마나 대출했는지 내라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출한 것을 내면서 그것만 통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견기업은 매출 5000억입니다. 엄청나

게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마치 중소기업인 것처럼 포장해서 같이 묻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이 같이 붙어 있으면 정말 중소기업이 애먼 욕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아까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분 분산 그 부분은 현실이기는 한데요. 지분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분이 잘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감안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은 이 규제를 통해서 완화해 줄 게 아니라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 일감몰아주기 과세 우대하는 이 부분은 그냥 그 자체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일감몰아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이게 누더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관련 세법들이 다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규제하는 부분들은 일관되게 규제를 하고요.

지금 사실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흐름들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충돌 행위는 작은 회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우대하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한 것들이 있어요. 일감몰아주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조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법 제도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관련 규정들은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협의하도록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이게 그때 홍중학 의원, 박원석 의원이 굉장히 반대하는 가운데 한참 논란이 있다가 됐거든요.

그때 속기록을 한번 봐 주십시오. 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했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아마 속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琳 위원** 하여튼 이것을 굉장히 오래, 몇 번 논의를 하다가 했어요.

○**엄용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실제 시스템상으로 지분이 타인들에게 굉장히 분산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이고 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의를 그냥 훑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법인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예를 들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했을 때 결국은 중소기업의 대표가 전적으로 다 맡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만 나누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지원제도가 있고 대기업은 규제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견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간의 지원제도, 중간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光琳 위원** 그게 의미가……

그래도 한 지 10년 안 됐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닙니다. 3년 됐습니다.

다음 설명 간단히 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디 기자회견 하러 가야 되어서 먼저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 하겠습니다.

가업상속 사후관리의무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 제도를,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30억 한도로 줄여야 된다고 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하에서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다면 사후관리 완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의 범위 등을 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이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16페이지입니다.

법인기업의 가업상속 사후관리의무 완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업용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사후관리의무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처분제한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을 계속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자산처분제한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법인기업의 첫 번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기업 간의 형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개인은 자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가업용 자산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식이거든요. 주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산 파는 거랑 법인이 자산 파는 거랑 다르다, 법인은 주식을 상속받고 그것을 한 주라도 팔면 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자산을 20%까지 일부 판다 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자산을 못 빼놓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가업용 자산 처분 이 조문 없애고, 나머지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형평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법인기업은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처분대가

는 어차피 법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법인의 업종유지의무나 고용유지의무는 지속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인하고 개인은…… 법인은 법인격이 법인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업용수 위원** 법인 분할하고 합병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산을 법인도 역시 일정 부분은 일정 기한 내에 처분을 못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지분을 5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동시 규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업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분만 변동이 없으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삭제를 하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업종변경 금지 조문이 또 있거든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개인은 자산을 팔면 그게 관리도 어렵지만 법인은 회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산 팔아도. 업종변경 금지 조문도 있고 지분처분 금지 조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관점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참고로 말이지요, 가업승계는 아까 말씀도 잠깐 드렸습시다마는 중소기업이 어렵거나 예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88%의 근원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근본 목적은 중소기업이 지속하는 겁니다.

상속세는 최종 정리할 때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세이연이 되고 회사를 정리할 때, 최종 상속이 일어날 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일단 이월과세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사업 같은 경우는 상속세의……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법인의 경우 얘기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법인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로 이월과세를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전부 이월이지요? 이연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월과세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종 정리할 때, 회사를 그만두겠다거나 할 때 그때 내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점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 상속세를 다 감면해 주는 것,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부의 대물림이다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책임의 대물림이다 하는 차원에서 가업승계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담 조건을, 그 대신 기업이 계속 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담 조건을 자꾸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박주현 위원님도 의견 제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공제를 받으면 그냥 공제로 끝났는데 14년부터 이월과세를 도입해 가지고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기간의 차익 부분은 계속 이월해서 끝까지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8페이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위임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거주택의 범위 및 상속주택가액의 계산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 규정을 두는 겁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체적인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두는 것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 주택 매매 전에 신주택을 매수하였지만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 후 이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어떤 주택을 가지고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왜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건가요? 법령에 빠져

있으면 법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상증법에 보면 동거주택의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과 같이 1세대 2주택을 일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를 동거주택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케이스가 구체적인……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법에 넣어서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만 보통 법에 기본적인 개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문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세대 1주택’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고 있고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이란 어떤 것이라고 쪽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를 시행령으로만 고치려고 하니까 위임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다, 그런 측면 때문에 ‘동거주택의 범위’라고 이것을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그것을 더 명확히 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도 법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만 위임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신설인데, 법에서 정한 동거주택이 어떤 것이라든지 또 계산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뒤서 기존 법안을 더 상세히 하는 거지요.

그런데 1세대 1주택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것을 1세대 1주택 또는 동거주택으로 봐야 될지 말아

야 될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딱 명문화시켜 놓으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시행령에 넣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위원** 제 얘기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에다가 더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고 최소한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것만 해야지, 너무 뭉뚱그려서 다 지금 위임해 놨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10년 살고, 그다음에 상속받고 하는 그 가운데 동거주택이라는 게 뭔가, 어디까지를 동거주택으로 보는 것인가, 동거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다른 데 방 한 칸 얻어서 살면서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려는 게 특정한 누구를 봐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유불리를 따져 볼 때 돈 가진 특정의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다 보니까 법에 위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에 다시 위임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지금 이언주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박주현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대안을 한번…… 지금 기본적으로 이언주 위원님도 시행령 위임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것이 1주택이고 10년 살았는데 집을 하나 샀는데 이사를 갔느냐, 못 갔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신설하는 조항 문안을 조금 더, 이언주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박주현 위원님이 위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좀 협의하셔서 다음번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판정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외에 특수관계법인 거래 금액 요건을 추가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는 것을 배제하며, 지주회사와 자손회사 간 매출액 등을 과세 제외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과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요건에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은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과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차감을 통해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기 때문에 이것들의 찬반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주회사와 자손회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자기 증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통의 내부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의견들이 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관계법인 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은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정상거래비율이라든지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는 부분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조세소위에서 숫자를 확정해 주신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아주 소규모 내부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의 어떤 범위를 정한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계보유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비율을

넘지 않기 위해서 문턱 효과가, 그러니까 세 부담이 갑자기 중간에 급증하는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행 수준이 정해지고, 현행 수준 자체가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좀 무관하다 그럴까요, 관계가 크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했는데, 과세 제외 매출액 범위도 그 당시 2013년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했고, 그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일단 김성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앞부분하고 뒷부분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개정안에서 거래비율 외에 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가 비정상적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상거래와 무관하게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상 맞지 않다 생각하고, 특히 정상거래비율이나 한계보유비율의 차감을 배제하는 이런 규정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실효세율을 높이고 싶다면 정상거래비율이라고 정해 놓은 이 개념을 조정하든지 해서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일용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또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취지를 좀 살리되 정부 쪽에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까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 궁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중견기업·중소기업 문제? 그래서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빠진 부분,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거나 굉장히 임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의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형해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차체에 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분은 법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세제실에서 김성식 의원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김성식 의원이 비율 말고 금액도 넣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금액은 행정부가 알아서 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인데 그것이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이중 규제가 되는지 하는 것을 김 의원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식 의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고, 이것은 재협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김성식 의원이 이해가 되면 그냥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예.

○전문위원 조의섭 21페이지는 상증법의 정부안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이 인적공제의 연수 계산 명확화인데 조문 간에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할 때 연수별로 얼마씩 하고 있는데, 앞의 조문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조문에 가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런 조문 2개가 상충되어 가지고 조문 정리 차원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다 카운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공제 한도 명확화입니다.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제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도를

두고 있는데 어떤 한도를 두고 있느냐 하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를 안 해 주지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을 한다든지 할 때도 공제를 안 해 주는데, 이 상속인의 범위가, 개념이 뭐냐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석으로 저희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유증받는 경우는 공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대생략 상속을 할 때 할증과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세대생략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아닌 손자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속세에다가 30%를 할증해서 과세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그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는 할증료를 40%를 더 높게 하는데, 이 20억의 개념이 뭐냐? 현재 조문에는 상속재산 가액인데 저희들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개념에 상속재산뿐만 아니고 상속 이전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해서 20억 원을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페이지의 법률 명확화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드는 차원에서 조문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부과한다든지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통합 규정한다든지 현재 서술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계산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알기 쉬운 차원에서 금융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내용이 종류주식 증자 시 증자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 보완입니다.

종류주식이라는 것은 전환우선주같이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 해 가지고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해 가지고 어떤 실권을 한다든지 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익 증여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할 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발행한 후에 다시 전환권을 행사해 가지고 전환우선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때 이익이 또 생기면 추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과세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인수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대주주로부터 어떤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을 초과해서 전환사채 이런 것을 인수할 때 과세합니다.

그런데 인수를 하는 상대방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이라는 것은 증권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증권회사뿐만 아니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수할 때도 과세를 하겠다, 그런 과세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단순한 내용이라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페이지 우선 논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21쪽, 22쪽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용수 위원 앞의 나머지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별 이의가 없는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환주식의 경우 추후 전환 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를 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는 증여 시점에서 평가를 한 가액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지 향후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서 또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전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추가 과세가 아니고 전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역으로 상황이 생겼을 때 공제를 해 준다면가 이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는 발행 시점에서 과세를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부 주주가 포기를 하고 나머지 주주가 인수를 하고 이런 특수관계자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발행 시점에 과세를 하는데 나중에 행사 시점에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전환비율을 변경하는 겁니다.

발행 시점 말고 나중에 가서 전환비율을 바꾼다든지 하면서 구체적 전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면 또 상대방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염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증여 시점에 평가한 가액이 향후에 떨어지거나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해서 차후에까지 다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법리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법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받아 보면 좋지 않을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증여 시점에서 평가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어려우니까 아마 보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염용수 위원 대체적인 방법이라도 그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다시 체크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 이것도 전환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권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라서 정부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21쪽, 22쪽 대부분 조문 명문화하는 거니까 하고, 다만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 과세 문제는 한번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설명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 대상 명확화입니다.

현재 최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주식을 증여받고 또는 취득을 한 다음에 5년 내에 상장이 되면 그 상장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상장의 개념이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그때 증여 이익을 과세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뭐냐 하면 그것을 좀 좁혀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상장으로 안 봐서 과세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주식 평가할 때도 비상장주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과세 제외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인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일감떼어주기입니다. 아까는 일감몰아주기인데 이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한테 사업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일감을 떼어 주는 그런데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가지고도 수혜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법인한테 지분이 50% 이상 있으면 이것은 자기 증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떼어주기도 마찬가지로 형평을 맞춰서 지분비율이 50% 이상 법인한테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받는 거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강화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완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시기 명확화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결손법인한테 자산을 증여한다든지 채무 면제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주식 평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문이 있는데 특정 법인의 증여 시기가 언제냐, 바로 증여를 한다든지 자산을 양도한다든지 이런 거래를 하는 날로 명확히 하는, 이것은 평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는 현재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일부 열거가 되어 있는데 법령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런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 취득 시 보유한도 명확화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많이 논의됐지만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5% 이상을 가지게 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5% 계산을 할 때 어떤 주식에 대해서 5%를 하느냐,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때 그 출연주식, 그다음에 다른 재산을 받아 가지고 출연받고 주식을 취득할 때 그것도 카운터하고, 그다음에 다른 자산을 팔아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신탁 세제 개선은, 현재 장애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할 때 5억 원까지 해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족이 아닌 타인이 증여한 경우도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5% 계산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5% 초과할 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자기주식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빼고 그렇게 5%를 계산함으로써, 이것은 과세를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식 보유한도 판정 기준 명확화인데, 5% 산정할 때 출연주식뿐만 아니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해서 출연한 주식 플러스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한 주식, 그다음에 그 법인이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다 합해서 5%를 계산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주식 보유한도 예외 사유는 현재 5% 초과할 때 과세를 하는데 부득이한 출연, 예를 들면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 5% 룰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거기까지 하시고, 23쪽과 24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에서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 어쨌든 지금보다 과세 대상을 좁히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감몰아주기에든 비슷한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법 규정이 미비해서 집어넣는 거라고 보기에……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용정보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종전에는 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 이런 데서 하다가 한국신용정보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리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신탁 세제 개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특별히 공제하는 그런 게 있나요, 증여세에서 공제하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연 1000만 원에 기대여명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입니다, 상속공제.

○박주현 위원 상속공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주현 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상속이나 증여 공제가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공제가 없다면 또 없는 대로, 증여공제도 하지 않는데 신탁의 경우에 특별히 그 규정을 넣어서 일반인이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공제를 하도록 하는 게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 이유가 일반 독지가의 장애인에 대한 증여를 장려한다 이런 것이 되는데 너무 애매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도 예를 하나 들어 주실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장애인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1997년도에 정부에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자 하는 배경하에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신탁 건수 한 22건 정도가 여기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지금은 직계존비속하고 친족한테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범위가 좀 좁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타인인 일반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할 때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출연을 하는 이런 부분의 실제 케이스가 뭐냐 하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있는데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이 법의 규정이 시행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면 일본에 장애인신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1999년도 그 당시에 도입을 했던 제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간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이 어떻다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경우에 따져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애매해서. 그리고 장애인신탁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법 취지가 애매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광은 위원님.

○박광은 위원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광은 위원 다 달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2012년에 조세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그 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은 일감몰아주기 아니고 사업기회 제공……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떼어주기.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자기증여를 넣느냐 마느냐가 논의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이연주 위원 질문에 답을 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 이렇게 자기증여를 하느냐 하면 이게 원래 같은 사업…… 예를 들어 합병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업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분 분할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분이 50% 넘고 이런 상태인데 내 할 일을 나한테 줬다고 해 가지고 증여다 이렇게 보기에에는 자기증여의 개념에서 보면 과세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특히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은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분할의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분할을 해서 별개의 법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되지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100%라 치면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일감을 떼어 주면 내가 100% 가지고 있는 주주이지 않습니까?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에 줬는데 결국은 내가 다시 증여를 받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그게 자기증여의 개념입니다.

○박주현 위원 100%가 아니라 50%지요? 지분

50%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일감몰아주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이연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연주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지 그런 경우에 굳이 예외를 인정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분할 안 할 것 아니에요? 분할 안 하겠지.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 인정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 분할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자기 지분을 그렇게 50% 이상 받으면서 분할까지 하는 경우가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을 헤징한다든지 이런 의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막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취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예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같은 말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이연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연주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설명 자료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특수관계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문제는 정부에서도 추가 자료를 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다른 말씀 계세요?

○박주현 위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비율 산정 방법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강화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착오가 있을 수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 100주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주식이 20주예요.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80주예요. 그러면 지금 현행에 의하면 5주를 합니까, 4주를 합니까? 4주가 가능합니까, 공익법인에 하는 게?

자, 100주 중에 자기주식이 20주예요. 그리고 자기주식은 지금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없잖아요. 나머지 80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5%를 80주 대비 4주로 봅니다, 아니면 100주 대비 5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엄격히 해석을 하면 현행 개정처럼 80주의 5%가 됩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4주를 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자기주식을 제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의하면 역시 4주가 되나요, 5주가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4주가 되지요, 4주.

○**박주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강화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5주로……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이기 때문에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으로 지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해석으로?

○**이연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5주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근거 조항 만들어서 명확하게 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하여튼 그것을 빼는 게 맞다……

○**이연주 위원** 지금은 5주로 본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5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주식을 뺀다는 것을 명백히 해서 앞으로는 4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23쪽, 24쪽은 말씀하신 특수관계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은 재논의하고 또 장애인신탁 세제 개선도 재논의하고 나머지는 협의된 것으로……

○**박광은 위원** 위원장님,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제가 아까 잠깐 들려들었는데 이게 딱 한 경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박광은 위원** 무슨 기관 설치법이나 조직 설치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기존의 신용정보업무를 은행연합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이것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이관이 됩니다.

○**박광은 위원** 그러니까 딱 그 한 경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한 경우인데 유사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유사한 경우들이 저희가 설립 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연주 위원** 법령에 따라야지요.

○**박광은 위원** 설립 근거 법령이 있을 경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있을 경우니까 그냥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박광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그 두 케이스는 재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어떤 것하고 어떤 것이 정리……

○**소위원장 이현재** 장애인하고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개선인데 이것은 현재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세무서장이 나중에 알아보니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80% 미만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감정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인정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그냥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지방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위임 근거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범위의 위임 근거인데 현재 시행령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위임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 토지의 범위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옮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인데 이것은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데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경우에 주식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현재는 상장주식이니까 그 기준일 전후 2개월, 그러니까 4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데 이것은 합병시점에서 합병비율이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 당일의 상장주식 평가액 기준을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을 판정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주식 평가 시 주식구분 조문의 명확화인데 현재 이것을 이렇게만 써놓기가 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을 평균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코스닥시장 주식도 동일하게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하는데 유가증권, 코스닥 이외의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넥스시장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은 뭐냐 하면 코넥스시장 주식은 시가로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조문 정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정청구 특례 조문인데 이것은 지금 금전을 무상 대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1년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년을 과세하는데 중간에 6개월이 돼 가지고 금전을 상환해 버렸다, 그러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차액 부분을 경정받는 내용인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무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특수관계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대부받고 1년간 차액 부분을

과세합니다. 하는데 6개월 있다 그것을 돌려줬을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외화증권 거래 자료 제출 근거인데 이것은 증권회사와 같이 주식 명의개서를 취급하는 자는 명의개서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외화증권 거래 부분도 과세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제출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아까 지나간 것 중에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중에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 이 부분은 너무 애매해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소위원장 이현재 몇 쪽이지요?

○박주현 위원 24쪽의 맨 마지막 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같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25쪽, 26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은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박광은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일단 합의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첫 번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동 규정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여서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

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3년 기준 433개의 전국 대학 중에 85.2%인 369개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동 제도가 폐지되었고, 동일한 연구용역이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타 연구소가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위탁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전체 연구비 수입 중 86%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면세를 했던 부분인데 일정 부분 효과가 달성됐다고 그래서 과세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면세를 하는 경우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 연구소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의 수익이 다 VAT가 과세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 측 답변하신 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 지역의 대학들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호소를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용역 발주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 보니까 하게 될 경우 예정치 세수 효과가 한 해에 90억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을 갖고 있는 대학에도 연구비를 확충해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박광온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를 살

리고, 산학협력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달성됐든지 또는 국가·공공 연구가 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혹시 열악한 산학협력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좀 확인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근본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이든 뭐를 떠나서 기업에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부가세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본래 부가세 대상이라는 행위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박광온 의원님 법안에 보면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를 해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좀 더 독려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다른 일반적인 거래하고 똑같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개념상 맞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학술이나 기술연구용역 자체도 주체가 민간 연구소일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전부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이연주 위원 현재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아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전달되면, 연구용역도 여러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화되기 전까지,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데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치가 서로…… 대금의 지급, 어떤 경제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거

든요. 그래서 지금 면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똑같이 과세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과세 대상은 맞는데 일단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면제를 했던 부분을 다시 과세를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세요.

정부에서 지금 이언주 위원님 또 박광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이것은 추가 자료로 배포된 '3.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이훈·이찬열·박준영 의원님 제안한 것.

○**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훈 의원님과 박준영 의원님께서 현재 기준금액을 48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안을 주셨고, 이찬열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재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면 일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업종별 낮은 부가가치율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며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 일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약 166만 명이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116만 명이 연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납부의무 면제자로 신고되고 있는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의 감소로 거래의 상호 검증 및 과세 자료의 양성화 기능이 약화되고 세금 탈루가 증대될 우려가 있으며, 자영업자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세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 부분은 현재도 개인사업자의 32.4%가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원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과표 양성화정책 차원에서 보면, 하여튼 이 부분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료가 없는 거래가 증가하게 돼서 부가가치세에서 상호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세금 탈루 증가가 우려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간이과세자가 됐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빠지고 나면 사실상 투명성이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간이과세의 합계액 24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잖아요. 더 안 내려가고 왜 2400만 원입니까? 한 2000만 원이나 1200만 원으로 하면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처음 제도 도입할 때 24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1200만 원쯤 하면 더 투명화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원래 처음에 24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단지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하고 그대로 두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축소되는 효과를 저희가……

○**소위원장 이현재** 몇 년도에 도입된 것이지요?
최 차관님, 사실은 간이과세 대상자인 자영업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물론 조세 투명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2400만 원 내려가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어려운 자영업자도 있으시고 소형업자가 계시지만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소위원장 이현재**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여기 몇 %지요? 3000만 원대면 몇 %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10%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 가지고 업종마다 다른데 5%에서 30%의 10% 기준……

○**소위원장 이현재**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과세의 투명성도 중요한데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24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 아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향할 수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지금 정부가 이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근거는 인상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간이과세 해당자를 늘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탈루의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다, 그래서 정부의 얘기는 조세정책의 방향에 반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탈루의 의도가 있어서 이분들을 저희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연주 위원** 그러면 뭔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세금계산서를 내 가지고 과표를 양성

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 것들이 정착돼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의 예를 봤을 때 부가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면제자라든지 간이과세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같이 간이과세가, 외국에도 세금계산서는 다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율을 좀 깎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기준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프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지만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은 계류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추가 자료 4페이지입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폐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정식 의원안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준영 의원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세액으로 해서 사실상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내용은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이를 공급하는 음식점업 등 과세사업자에게 면세농산물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업종별로 사업장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공제율 및 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2016년 말까지 기본 공제 한도보다 5~10%p 높은 우대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음식점업이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민생안정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용카드 매출 증대로 매출액이 양성화되어 매출과세표준은 증가하였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액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는 사업자가 부담한 실제 세율과 평균 매출원가 비중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공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등으로 음식점업 등 사업자의 매입세액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 그다음 사업의 제반비용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의 매입액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점,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조세감면 규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 기재부가 연장하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굉장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몰이 도래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일몰 연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안은 이 자체를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면서 그다음에 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아예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의 2010년도 조세소위에서도 이게 원래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한번 상향 입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의에는 시행령 정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시행령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제율 인상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부분까지만 정부 의견이고요. 이 부분의 공제율을 더 올린다든지 한도를 폐지

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일몰은 시행령으로 18년까지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님.

○이혜훈 위원 저는 규칙에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조세법정주의인데 어쨌든 간에 세율하고 공제율 이런 것은 법률에 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도를 폐지한다거나 공제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기재부가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어렵다면 기재부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상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내용상 지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된 다든지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공제한도라는 게 매출액의 50%, 음식점의 경우에는 6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50%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을 한 60%, 70%까지, 물론 그 경우의 수가 적기는 하겠지만 정말 재료에 모든 것을 다 투여해서 농수산물을 50% 넘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공제한도가 딱 50%에 걸려서……

어차피 그 율은 108분의 8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제 한도를 50%로 딱 묶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저도 공제 한도를 굳이 묶어 놓는 게 합리적이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공

제 한도를 정부가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공제 한도가 논리적으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한도를 둔 것인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세행정에서 다른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지 공제 한도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할 것 있으면 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그간 많은 논란이 돼 와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축소 내지 폐지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특히 13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입세액을 따지고 보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8%를 공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 율을 낮추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사자들하고 협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율은 놔두고……

율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것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 공제, 탈루 이런 것을 막자, 그래서 성실하게 한 사람은 혜택을 그대로 8%를 받되 그 당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매출액의 한 30%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 4억 되는 사람은 40%로, 그 밑에는 50% 이렇게 저희가 그때 이 사람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한도를 정한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나름 통계를 놓고 했습니다. 통계를 놓고……

○이언주 위원 아니, 그 통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임대소득 내고 인건비 내고 재료비에서 농수산물 30%다 이게 맞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이 식당을 하면서 그야말로 재료에 몰빵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50%를 넘어가는 경우에 한도를 50%로 하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왜 50%로 했느냐, 사실은 정부로서는 할 말은 있지요. '이게 원래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원하는 거거든. 그리고 50%로 한 것은 농수산물, 거것으로 이렇게 할까 봐 못 미더워서 한도를 정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는 꼭 그것을 관찰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은 위원님.

○박광은 위원 한도를 설정한 이후에 외식업자들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료가 있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특히 한도를 매출 40%, 50%를 정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올리자 해 가지고 현재 한도를 60%까지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첫 신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 사업자 중의 85%가 한도 내로 들어오고요. 한 15% 정도가 이 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15%가 되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박광은 위원 저는 이렇게 하니까 세금이 얼마 더 걸렸나를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한 1500억 정도 더 걸렸습니다.

○박광은 위원 외식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이분들은 납부세액이 53%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박광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여기 숫자하고 다른 겁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박광은 위원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청에 신고한 숫자가 1500억 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그게 53%가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지요. 전체 공제액이 2조 2000억인데 그중에 지금 1500억이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통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업자들이 급작스럽게 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이언주 위원 외식업계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 기준이라는 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렇지요? 지금 유흥이나 아니냐 이런 게 이 기준이 되는 게 합당합니까? 그래서 차별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맞춰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협의 과정이나 실태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인 음식점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과세하면서 공제를 이런 기준으로 해 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제를 차등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공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평균 내 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선심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실제 통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음식점협회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한 숫자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라는 것들을 보면 연역적인 이유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공제 한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막 하니까 이런 식의 합의점이, 타협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공제 한도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자영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는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100% 원할 거고 정부도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이언주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세 부담이 얼마나, 박광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50%가 늘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을 올리자는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액 계산 관련 규정들도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언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시겠지요?

○이언주 위원 예, 하여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헌법적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준 없이 막 하면…… 사실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되 만약에 지금 어떤 다른 얘기를 하실 것이 있으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재협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전문위원, 사실은 우리가 같

길이 멍니다.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 또 정부 답변,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한 간략간략하게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29페이지, 정부안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신청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거래를 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야 되는데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하면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조특법에 있는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단 조문을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면서 신청기한도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늘려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음식점 같은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 1% 내지 2%를 부가세에서 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좀 더 우대해 가지고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기타는 1.3% 이렇게 우대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인데 보통 수입을 하게 되면 세관에 부가세를 내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그것을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절차를 덜어 주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고 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만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기한 연장인데 사업의 포괄양수·양도할 때 사업 양수자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한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월말에 이루어지고 이러려면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사업자 용역공급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중간에 위탁매매인이나 이런 사람을 끼우면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가지고 지급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리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다음에 30일 후에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조기환급제도라 그래 가지고 수출사업자나 설비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 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그러니까 다음 달, 주로 월별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그때부터 15일 내에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구조조정 사업자에 대해서도 넣어 가지고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입니다.

현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지연발급과 미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면 1% 가산세를 물리고요. 그때 안 하면 2% 물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좀 낮은 가산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앞의 소득세·법인세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현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매입자가 수취를 안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부담도 매입자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29, 30, 31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두 번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일몰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세감이 2000억이 넘어서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재논의로 갔으면 좋겠고요.

뒤 페이지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적용 대상에서 원래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대상에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설비 확장하는 경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적용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기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애매하고, 만약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것이라면 어려운 경우를 더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 딱 이렇게 짝어서 하는 것이 언뜻 봐서 체계가…… 그러니까 1호·2호·3호 간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가산세 부분 역시 어쨌든 세감이 상당한 정도씩 발생하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아까 부가세 조기환급 적용 대상 확대요, 조기환급의 취지가 뭐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는 확정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기간이 조금 길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을 좀 덜어 주는 그런 내용……

○이언주 위원 사이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수출도 그렇고 설비 그것도 그렇고.

박주현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것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의 사이클이 너무 길다, 그래서 조기환급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하게 되면 주로 법원 인가 결정을 받아 가지고 회생계획이라든지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압박

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기환급을 통해서 그 기간이라도 짧게 해서 유동성 부담을 좀 덜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기업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한 기업들은 경영 정상화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냥 막연하게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이행 중인 기업들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언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다가 규정하는 것이 맞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하나의 지원 형태로 조기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이언주 위원 조금 이상한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환급을 30일 내에 하는 것을 15일 당겨서 해 준다 그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 취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1호, 2호, 3호가 잘 안 맞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앞장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납부유예를 해 주는데 중견기업까지 해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원래 그런 프로세스라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프로세스를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외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 확대, 그다음에 부가세 조기환급 적용 대상 확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산세 부담 완화, 4건에 대

해서는 재논의하고 나머지는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견기업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지원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지원이 있고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생기니까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으로 가서 허든 챔피언으로 가라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중견기업의 브리지를 만드시…… 그러니까 인정해야 될 분야를 정확히 특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중소기업에 다 붙이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 부분은 참고로 나중에 기재부에서 한번 설명을 별도로 올리십시오. 중견기업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를 기한 연장하는 것은 금액이 좀 크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반복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계층들 저기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한 번만 더 봅시다.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커서 한 번만 더 보고……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박주현 위원 아니, 제가 막은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합의를 하고, 박주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올리십시오.

○박주현 위원 아니, 일단 재논의로 넘겨 주세요. 전체적으로……

○소위원장 이현재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추가 논의를 한번……

○박주현 위원 아니, 재논의. 이언주 위원님, 재논의……

○이언주 위원 그냥 넘어가시요. 왜냐하면 다르게 반복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논의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박주현 위원 세감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세금…… 그러니까 그 액수 할 때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세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재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박주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좀 올리십시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마찬가지로 사항인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라든지 각종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납세자들한테 협력의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국민들한테 떠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매겼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지금 한 50%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버리시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재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고 ‘됐네, 됐네’ 하고 합의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세감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가지시요.

○전문위원 조의섭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및 유연탄 세율 조정 등입니다.

강효상 의원께서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주셨고, 정부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로열젤리 및 에너지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을 삭제하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kg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골프 인구가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2만 원의

이용료 인하 수준 갖고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경마·경륜 등 사행성 조장을 억제하자는 취지지만 골프는 사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 이용에 큰 차이가 없는 대중제 골프장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99년에 도입되었다가 인하해서 7%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세품목으로 지정된 99년과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로열젤리를 사치재로 보기는 어렵고, 녹용 또한 동일한 사유로 2015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같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0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불필요한 조항을 조문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기본세율을 kg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교정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발전연료 및 에너지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현재 LNG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1원당 발열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상함으로써 전력생산비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여쭙 봐도 돼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면 전기세는 한 얼마나 올라가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한전의 영업이익 등을 볼 때 요금 인상 없이 인상을 할 생각입니다.

○이혜훈 위원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저는 유연탄 올리는 것 찬성이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강효상 의원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것이 대중 골프장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골프가 사치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중화된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촉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수용도가 낮다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소위에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조금 곤란한 것은 국회에 떠밀면 어떻게 해요?

○이혜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얼마 전에 퍼블릭 골프장 개별소비세 내렸을 때 사용료가 얼마 내려갔어요, 피가? 세금 내리는 것만큼 피가 내려가는 데 몇 % 반영되나 좀 보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점은 통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세금은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피는 별로 안 내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지금 대중제 골프장이 평균적으로는 회원제보다 낮습니다.

○이혜훈 위원 낮은데 문제는 세금을 내려 줘 봐야 업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정부에서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혜훈 위원 업자들만 좋아질 것 같으면 내려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먼저 일어나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특히 강효상 의원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요. 지금 큰일 납니다. 이게 국민정서에 엄청나게 반하고요. 특히 지금의 이 환경에서는 정말 완전히 정면으로 민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퍼블릭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하고…… 어찌됐든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것은 시세도 그렇지만 약간의 어떤 특권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중화되어 있는, 어쨌든 대중 골프장이라고 하는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줬으면 이 차별성, 차등되는 부분들을 유지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또 인하해 줘 버리면 이것은 전체적인 방향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행성이 아니다, 사치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서민들의 삶을 이해를 못 하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골프 대중화 어찌고어찌고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미 그 얘기 자체가 시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또 박주현 위원님……

○이혜훈 위원 저도 동의해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업자가 얼마나 먹나 그거 보자고 그런 거지 저도 반대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혜훈 위원님……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답할 거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물어보니까 퍼블릭 골프장은 원래 없었고요, 수도권 외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2008년도 10월 달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만 1000원 정도 세금을 낮춰 줬더니 가격은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세금 낮춰 준 것

에 한 몇천 원 더 붙여 가지고 그 정도 인하겠다는 효과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혜훈 위원 지금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되고 있으니까……

○이혜훈 위원 아니요, 과세되고 있는데 가격이 다시 반등했거나 그런 것은 없느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하세요.

○박주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모자라니까 대중골프장에 주었던 혜택도 다시 없애자, 이런 안을 내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4000억 원의 세감을 가져오자고 하면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혜훈 위원 지금 결론 안 내요.

○박주현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이 유연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전하고 달을 잘 해서 이게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확실히 개런티를 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확실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인상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여러 번 대외적으로 말씀……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부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골프장 소비세 내리면 연간 4000억씩 된다는데 정부가 균형 있게 답변을…… 당신들 생각이 어떻게 그래? 그것은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지, 국민들이 오해한다고.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잠깐만, 그런데 로열젤리를 왜 내려야 돼요? 저 이거 궁금한데 왜 그러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훈 위원 로열젤리, 왜 내리려고 생각하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지난해에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게 77년도

부터 과세해 왔는데 그때는 특별소비세라고 해 가지고 사치성 물품의 일환으로 과세를 했는데 지금 로열젤리 자체가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완화됐지 않느냐……

○이혜훈 위원 그런데 이거 세금 때문에 못 사먹는 사람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외부불경제나 이런 쪽으로 하지 과거처럼 사치재 이런 중심으로 해서 받겠습니까?

○이혜훈 위원 그런데 로열젤리는 분명히 약품 성분상 어떻게 보면 동일 성분에 해당하는 많은 대체재들이 있는데 굳이 로열젤리를 사먹겠다는 사람들은 이 정도 내고 사먹어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이혜훈 위원 꼭 로열젤리 먹지 않으면 생명이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사먹을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입장에서 로열젤리 하나만 달랑 놔 놓기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하나만 놔 놓는 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골프장도 있고 다 많은데 뭘 그러세요, 모피도 있고 보석도 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로열젤리를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혜훈 위원 글썄, 좀 이상하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문제 제기된 게 로열젤리……

유연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공감하셨고, 골프장, 에너지소비전력 가전제품……

가전제품도 이걸 없으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이미 과세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 정리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유연탄하고 가전제품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골프장은……

○이혜훈 위원 골프장은 폐기.

○박주현 위원 계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혜훈 위원 그렇기는 한데 다시는 올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세소위원장 바뀌니까 또 올

리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계류시켜서 당장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혜훈 위원 아니, 조세소위원장 바뀌니까 발의한 의원님이 압력 넣어 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더라고. 이거 못 올리는 걸로 전문위원 똑바로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장님, 그리고 로열젤리는 재논의로……

○염용수 위원 로열젤리는 처리를 하지요.

○金光琳 위원 지금까지가 보류한 게 다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그러세요.

○이혜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문위원 똑바로 챙기세요. 조세소위원장 바뀌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올리더라고.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로열젤리는 재논의하고.

○염용수 위원 저는 로열젤리는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없애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이혜훈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좀 반대 의견을 얘기했지만 원한다면 하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로열젤리는 정부안 수용, 유연탄 수용,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정리하는 거고, 골프장 이것은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다음은 기타 개정사항 정부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사유를 당초 저희들이 법률 때는 지방세법을 그대로 준용했는데 이것도 조문 정리 차원에서 그 조문을 개별소비세법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으시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사유 명확화, 조문 정리하는 겁니다.

○이혜훈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다음,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세법입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납세의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박광온 의원안은 금융보험업자 중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교육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거나 이를 중개하여 대가를 얻는 자 및 전당포 영업을 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전대부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도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일단 박광온 의원님이 내신 안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부업의 고객이 서민들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을 봐서 하여튼 논의를 해 주시되 저희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님안에 찬성한다고요.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 180억 정도요.

○이혜훈 위원 총액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대부업을 과세하게 되면.

○이혜훈 위원 아니, 개별기관이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대부업 전체요.

○이혜훈 위원 깜짝이야, 개별기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金光琳 위원 교육세 세수가 180억이 더 들어오는 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金光琳 위원 대부업자가 많기는 하다만……

○이혜훈 위원 물론 규모마다 워낙 다르겠지만 평균 기간으로 치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보면 전체 대부업체 수가 15년 기준으로 8752개입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빨리 나눠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작은 개인들도 있고 큰 법인들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나누면 한 얼마나 되나?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정부에서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완전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다시 점검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200만 원, 평균.

○이혜훈 위원 200만 원이면 통과하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점검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점검해서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말씀드리는데는 이게 상호금융조합, 단위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비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격상 거기는……

○박주현 위원 거기는 특별한 기관이고 여기는 대부업……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상부상조 목적이 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업종 간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큰 방향이고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박광온 위원 정부는 거기도 다 포함시키자는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이 경우에는 대부업까지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혜훈 위원 그러면 재논의합시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할 것인지, 농협·신협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

○소위원장 이현재 일단 그런 취지에 공감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에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은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제외한다든지 하는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전체 하에 재협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 교육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농수축협·마을금고·신협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닌데 대부업을 지금 넣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대부업도 아닌데 대부업이 들어가는 거고.

○金光琳 위원 대부업은 처음 넣는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金光琳 위원 그런데 39페이지 제일 밑에 ‘대부 업무를 하는 은행, 농협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이 내용은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농협은행은 과세를 하는데 단위농협 이런 데는 과세를 안 한다는 겁니다.

○金光琳 위원 그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업무는 아마 대출업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규정상 대부업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대부업무, 우리가 말하는 대출업무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예, 대출업무인데 규정상은 대부업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기 농협은 단위농협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조의섭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입니다.

○金光琳 위원 거기에서 대부업무를 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는 대부업자가 하는 대출을 보통 말하고요, 은행이 하는 대부라는 것은 대출을 보통 얘기하

는 겁니다. 아마 같은 성격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쓰신 거라서……

○염용수 위원 대상이 되는 업체들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金光琳 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납세의무화라는 속에, 고리채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부업자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은행과 농협은행이 하는 일반 대출업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대부업자 그러면 산화머니 이런 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기 조문을 보시면, 38페이지 보시면 1호부터 쪽 나오는데 은행, 뭐 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행업법에 나온 것이고요. 16호에 추가를 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니까 김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光琳 위원 이때 추가하는 대부업이 어떤 업이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업자입니다. 요즘 TV 광고에 나오고……

○박광온 위원 러시엔캐시 이런 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산화머니, 지금 최고이율이 27.9%인 그 은행……

○金光琳 위원 30% 이자 받고 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언제까지 하시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툼한 III권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1회독을 해야 되니까요.

○金光琳 위원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나지.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질문을 간략히 해 주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금융·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융·보험업자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중간예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교육세 납부액의 4분의 1을 분기별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금융·보험업자는 세 차례에 거친 중간예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 중간예납을 미납한 경우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하게 법인세의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이현재 이견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42페이지, 농어촌 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율을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및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금융소득자를 고려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거 재논의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또 질의 계십니까?

○박주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새로운 공제를 집어넣는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엔젤투자 이

런 게 어쨌든 좀……

○소위원장 이현재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44페이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개업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하여 세입자가 예측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낮아서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한다면 임차보증금 손실 방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과세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니 만큼 인근 임대인들의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축적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람 주체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단에 달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인중개사의 어떤 임대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같은 것도 좀 추가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협력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금 같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국토부랑 공인중개사협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규정들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부가 대안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재협의를 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술품 등 압류물품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재징수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세징수법은 고지된 국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서장이 지정한 분납기간에 국세와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상에서는 실무상으로 재징수유예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징수유예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법 제61조에 근거해서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산 중 예술품 등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정가액 대비 매우 낮은 가격에 하고 있는 비효율적 운영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세무서장의 직권이나 납세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하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왜 세수 효과가 감세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견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플러스입니다.

○**박주현 위원** 플러스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오타입니다.

최송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 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과 더 협의를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 이걸 이번에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에 몇 쪽으로 가야 되나요?

○**전문위원 조의섭** 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해서 현행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뿐 아니라 국가별 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국내 9532개의 해외법인 중 4752개가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문제 되고 있는데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다른 말씀 계신가요?

○**이혜훈 위원** 아니, 이 국가별 보고서만으로 충분해요? 예를 들면 구글을 이것으로 과세할 근거가 생겨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또 별개의 이슈입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이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사업장을 다른 데 조세피난처에 해 놓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안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그것하고 별개의 이슈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이전가격과세를 위해 가지고 OECD에서 BEPS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모회사에 소재하는 나라에다가 전 세계 자회사에 관한 거래정보를 다 제출하고 그것을 국가 간에 이전, 교환을 합니다.

○**이혜훈 위원** 국가별 보고서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가 간에 교환을 해 가지고 각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 거래현황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지금 루이비통 코리아나 구찌 코리아 이런 회사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안 만드세요?

○**이종구 위원** 법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혜훈 위원** 아니, 우리가 만들기는 하는데 정부가 이것도 하면서 좀 해 주면 좋잖아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현재** 자, 이렇게 하시지요.

○**金光琳 위원** 일단 이것은 추가하고……

○**이혜훈 위원** 예, 이걸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예, 이것은 통과시키고 이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혜훈 위원** 이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좀 해 달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으로 가지지요.

○**염용수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가별 보고서 있잖아요, 지금 개념이 확립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OECD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염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전 세계에 서식까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거기에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합의 관련 제도개선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합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OECD 모델조세조약의 개정 권고안에 바탕해서 상호합의를 거주지 외에 원천

지 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걸 OECD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합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53페이지는 기타 개정사항으로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존에 개별통합 기업보고서가 도입되어 가지고 현재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별 보고서를 도입하면서 사업연도 말부터 1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켜 가지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다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두 번째 것은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국외예금을 증여할 때 현재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수증자한테 과세를 하되 증여한 사람한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서 과세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적법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증여자인 거주자한테 바로 과세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또 다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세 번째 것은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해 가지고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호합의 신청을 한 다음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철회를 하게 되면 과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철회일로부터 1년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들 안 계시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54페이지, 관세법 입부개정 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 문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하고 특허 갱신을 중소·중견기업 관계 없이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좀 나누어지는데 찬성의견은 면세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자칫 면세점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기존 면세점의 특허기간 연장 여부 및 특허의 갱신 여부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종전 5년 이내 기간으로 특허를 받은 자가 특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기존 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클리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관세청도 같은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지요, 당연히.

○이종구 위원 이게 관세청 의견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관세청, 누구 나왔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안 나왔습니다마는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박광은 위원님.

○박광은 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감사 또 전체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겨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관련 법률 준수 확인 의무 완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완제품

각각에 대해서 세관장 확인 등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완제품에 대해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이것은 원재료에 대해서 혹시 식약처에서 그것을 좀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을 관세국 제조세정책관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쪽도 양해를 했고요. 보세공장에 투입할 때 한번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세공장에서 완제품 수출할 때 또 한 번 제출하기 때문에 두 번 제출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절차만 간략화해 주는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식약처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번 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을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박 위원님, 재협의를 식약처 의견 확인하고?

○박주현 위원 예.

○金光琳 위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를 전제로 식약처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 문제는 관심 있는 위원님이 계셔서 전문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계실 때 하고요.

○이종구 위원 왜요?

○소위원장 이현재 특별하게 좀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연주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셨는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조금 특별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무슨 레터 같은 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한테 다 보낸 것인가요?

○박광은 위원 예, 저희 방에도 왔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요? 레터가 상호 FTA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자고……

○소위원장 이현재 항공기 부분품 문제는 다음 번에 논의하도록 하고, 기타 개정사항 정부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먼저,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 상향 입법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인데 현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때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특수관계자한테 먼저 구분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구분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명확히 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세 번째는 현재 세관장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인데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세기본법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것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고려사항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 정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국내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봐 가지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가지고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된다는지 하는 그런 경우에 좀 고려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것은 다 국세기본법하고 맞추는 내용들입니다. 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를 소액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에 현재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세관공무원이 검역검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채취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세관공무원 이외에 식물방역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채취하는 견본품도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1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하는데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해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체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자료를 제출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위탁사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처벌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수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든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은 아까 항공기하고 연계돼 있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을 당초 스케줄보다 조금 더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관한 관세 감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면 축소기간을 좀 더 늦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추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마지막은 HS2017에 대한 관세법 개정인데 현재 WCO에서 품목분류협약을 5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2년 HS 분류표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HS2017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관세율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기타 사항으로 대개 날짜 조정 이런 것인데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관세 축소 유예 이것은 재논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박주현 위원 지금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관세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고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배우자, 청구인, 4촌 이내 혈족에게 이것을 대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기본법에 하고 있어 가지고 국세기본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췄다 하더라도……

○소위원장 이현재 기존에 있는 법하고 일치시키는 것이니까요.

- 박주현 위원 그래도 한번 봅시다.
-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를 전제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光琳 위원 박주현 위원님만 찾아가서 설명 하라고 그래요.
- 소위원장 이현재 물론이지요, 박주현 위원님께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 그러면 제조장비 이것만 재논의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문제는 박주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의섭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정부안으로 환급금과의 상계 규정 확대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을 확대해서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한 납부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 말씀드립니다.
- 환급금에 대한 상계제도를 확대할 경우에는 환급 신청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급 신청자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계제도를 확대할 경우에는 정부의 징수 편의와 환급 신청권자의 권리 보호가 충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계제도는 서로에 대한 채권을 가진 양자가 상호 간 편의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중 정부만 환급 신청권자에게 일방적인 상계 권한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먼저, 정부가……
- 소위원장 이현재 예, 말씀하세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이 상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인 상계 권한을 갖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환급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계하도록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대안 제시한 것으로

해서 합의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63페이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외 대상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와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관세사에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파면·해임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뒤의 금품 수수로 강등·정직된 자의 혜택 배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자격사별로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의견 제시를 조건으로 해서 재협의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파면·해임은 받아 주고 그 밑에 있는 것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밑의 것만.

○전문위원 조의섭 64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을 세무사법에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다음번에 하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다음에 6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언주 위원님께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세법.

○전문위원 조의섭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아동수당세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을 신설해서 아동수당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의 재원을 위해서 이자·배당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

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세를 신설할 경우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서 출산을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목적세를 여러 차례 도입·시행한 바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한 교육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수당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목적세 신설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원인 이자·배당소득, 법인소득 등에 서로 다른 세목인 이자·배당소득세, 법인세 등과 아동수당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과세구조가 형성되어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 아동수당세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등과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때 이런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 이렇게 증세를 하는 부분, 새로 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목적세 신설은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사실은 이것이 워낙 덩치가 큰 얘기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고심 끝에 이런 방안을 낸 것인데, 이게 아동수당과 연계된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제가 제안했고 그 아동수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세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아동수당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 대한민국이 정말 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저출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 부처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기재부에서 가장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붙들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어요, 이 저출산 문제를. 말은 복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복지부에서 할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기획? 나라의 장래를 기획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박광온 의원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 세수가 얼마나 되고……

○박광온 위원 제 설계대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한 15조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550만 명. 그래서 9조, 일단 9조를 확보하는……

○金光琳 위원 9조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아동수당의 아동은 누군가요, 출산아는 아니고?

○박광온 위원 아니요, 출산부터 들어가지요. 1살부터 2살까지는 10만 원.

○金光琳 위원 월, 10만 원?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2살부터 5살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6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프랑스 같은 데는 성년이 되기까지를 아동으로 하고 지급하는데……

○金光琳 위원 거기는 30만 원?

○박광온 위원 예, 우선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로 하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냥 여기서 통과시킬까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마는 정부에서 새로운 비목 신설에 따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 광 립	박 광 온	박 영 선	박 주 현
송 영 길	엄 용 수	이 언 주	이 종 구
이 현 재	이 혜 훈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 의 섭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최 상 목
세 제 실 장	최 영 록
조세총괄정책관	안 택 순
소득법인세정책관	임 재 현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상 원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 상 울